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 74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연고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경기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용사용료 50퍼센트 범위 감면 사항에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훈련 등을 추가함
(안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훈련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 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u>연고 프로구단이 해당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 하는 훈련 등</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조경기장을 이용시 연고 프로구단의 전용사용료 감면을 조정으로 인한 세입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 감면을 조정에 다른 세입의 순감소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세외수입 감소액(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30%감면(현행)	50%감면(개정시)	비 고
보조경기장 사용료수입 (프로 연고구단 훈련 등)	86,135	61,525	△24,610

4.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신중환